이 보도자료는 2020. 10. 29.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검찰 PROSECUTION SERVICE	**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**	**보도자료** **2020. 10. 29.(목)**

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준엽 **전화** 02-3219-4420 / **팩스** 02-3219-2397 **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실장 황진하** **전화** 02-3145-5600 / **팩스** 02-3145-5619	자료문의 : 금융조사제2부장실 전화번호 : 02-3219-2442 주책임자 : 부장검사 이방현

제 목	**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매수추천 정보 악용사례 적발** **-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구속 사건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▣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매수추천 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여, 10. 29. **甲증권사 애널리스트**(리서치센터장) A 및 **투자상담사**(乙증권사 직원) B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**구속기소**하였음

▣ **A는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에게 알려주어 매수하게 하고,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**하는 방식으로 B와 함께 **총 4억 5,000만 원의 부당이득**을 취득한 사건임

▣ 본건은 '19. 7. 발족한 **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(검사의 수사지휘)**으로,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**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**한 사건임

▣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임

1 피고인

- A (52세, 前증권사 리서치센터장, 구속)
- B (36세, 前증권사 투자상담사, 구속)

2 공소사실 요지

- 공모하여, ’17. 3. ~ ’19. 4. A는 자신이 작성하는 조사분석자료(매수추천) 기재 종목을 지인인 B에게 알려주어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하고, B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주가 상승 시점에 A가 알려주는 대로 해당 종목을 매도하여 약 4억 5,000만 원 상당 시세차익을 부당이득으로 취득, 사기적 부정거래 및 직무상 정보이용 **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]**

3 수사경과

- ’20. 4. 29.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
- ’20. 6. ~9. 피의자 회사 및 자택 등 압수수색
- ’20. 10. 7. **A, B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**
- ’20. 10. 15. **검찰 송치(기소의견)**
- ’20. 10. 29. **A, B 구속기소**

4 수사의 특징

-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범을 **구속한 첫 사건**

  ※ 별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현황 참조

- 검사가 **수사 착수 단계부터**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혐의를 입증하였음

-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는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, **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한 사건**임

[별첨]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현황

- **(출범배경)** '15. 7. 24. 날로 첨단화·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여,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3 개정('15. 8. 11. 시행)

- **(출범개요)** '19. 7. 17.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및 출범*

  * 서울남부지검장의 금융감독원 직원(본원 10명, 검찰 파견 5명)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(7.17.) 및 '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식' 개최(7.18.)

- **(담당업무)**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며, 관계기관(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법무부·검찰) 협의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'패스트트랙'*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 중 검사 지휘 사건을 수사

  * '패스트트랙(Fast Track)' 제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,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, 금융감독원 등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, 금융감독원의 기초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

■ 일반 증권범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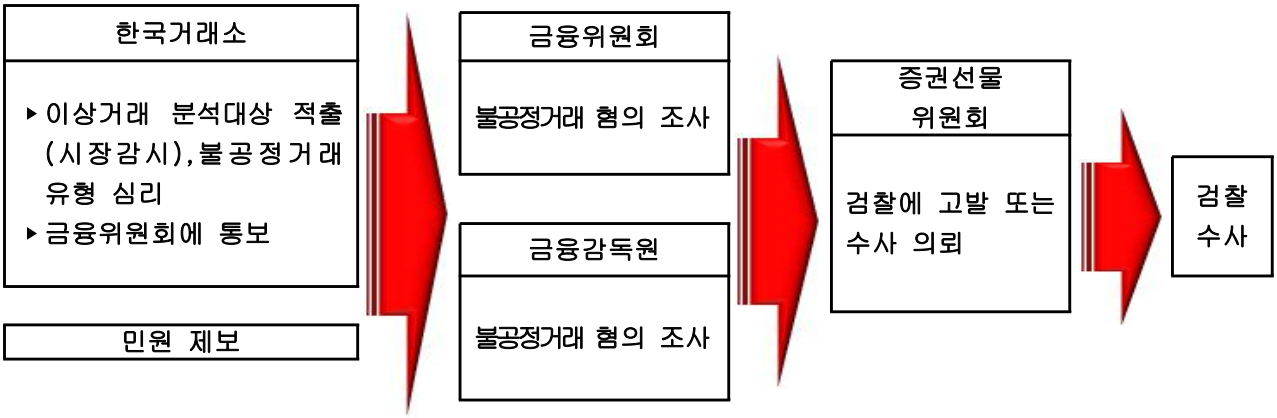

■ 'Fast Track' 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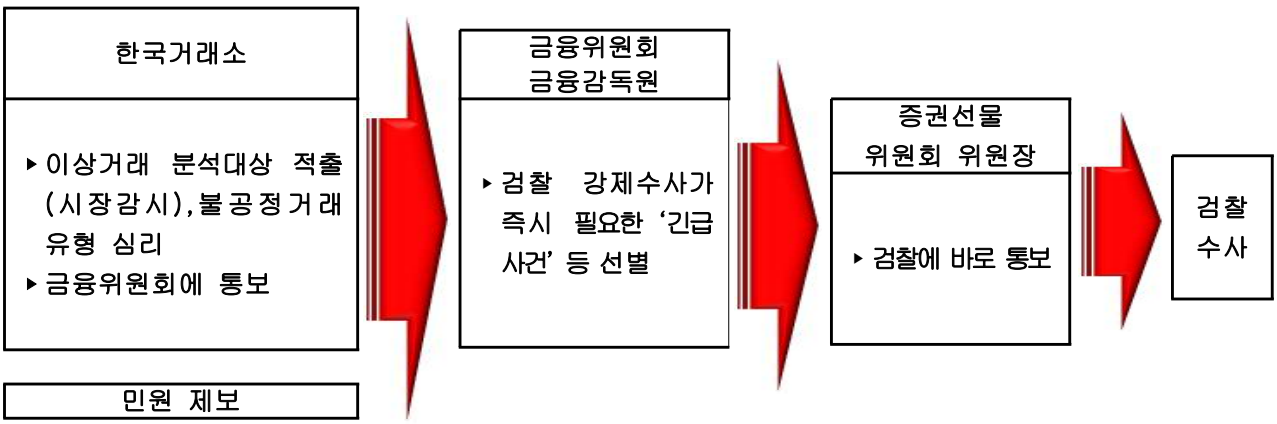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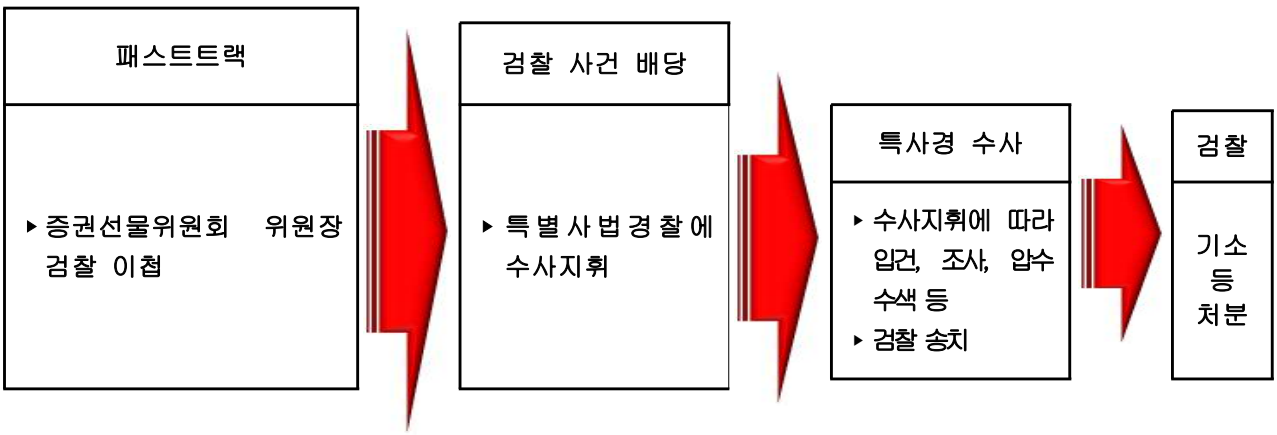
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